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안)

(제 4 편 선체의장)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타두재 및 핀틀의 베어링</p> <p>901. <생략></p> <p>902. 베어링의 길이</p> <p>베어링의 길이 h_b 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p> $d_{sl} \leq h_b \leq 1.2d_{sl}$ <p>d_{sl} : 타두재 또는 핀틀의 슬리브 외면에서 측정된 지름(mm).</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타두재 및 핀틀의 베어링</p> <p>901. <현행과 동일></p> <p>902. 베어링의 길이 <u>(2020)</u></p> <p>베어링 면의 길이에 대한 지름의 비율은 1.2 이하이어야 한다.</p> <p>핀틀의 베어링 길이 h_b 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p> $d_{sl} \leq h_b \leq 1.2d_{sl}$ <p>d_{sl} : <u>슬리브 외면에서 측정된 핀틀의 실제지름(mm).</u></p> <p><이하 현행과 동일></p>	<p>- IACS UR S10과 일부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 103. <생략></p> <p>104. 창구덮개 【지침 참조】</p> <p>1. 노출갑판 상의 창구덮개는 풍우밀이어야 한다. 폐위된 선루내의 창구덮개는 풍우밀이 아니어도 된다. 다만 평형수탱크, 연료유 탱크 및 기타의 탱크에 설치된 창구덮개는 수밀이어야 한다.</p> <p>2.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구덮개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p> <p>3. <신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 103. <생략></p> <p>104. 창구덮개 【지침 참조】</p> <p>1. 노출갑판 상의 창구덮개는 풍우밀이어야 한다. 폐위된 선루내의 창구덮개는 풍우밀이 아니어도 된다. 다만 평형수탱크, 연료유 탱크 및 기타의 탱크에 설치된 창구덮개는 수밀이어야 한다.</p> <p>2.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구덮개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p> <p>3. <u>준설선의 감소된 건현 지정에 대한 지침(준설선 규칙 부록 1)을 적용받는 선박의 창구덮개는 준설선의 감소된 건현 지정에 대한 지침에 따라 창구덮개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020)</u></p> <p><이하 현행과 동일></p>	<p>- 준설선의 감소된 건현 지정에 대한 지침을 적용받는 선박의 창구덮개 면제 요건 명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선수문, 현문 및 선미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현문 및 선미문</p> <p>201. 일반</p> <p>1. <생략></p> <p>2. 배치</p> <p>(1) 여객선의 선미문은 건현갑판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현문 및 로로화물선의 선미문은 건현갑판상부 또는 아래에 배치할 수 있다.</p> <p>(2) 현문 및 선미문은 해당위치 및 주위의 구조와 동등한 강도 및 밀폐성을 가져야 한다.</p> <p>(3) 현문 및 선미문의 하단은 원칙적으로 <u>최고 만재흘수선상을 기점으로 하여 선측에 있어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보다 낮은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u></p> <p>(4) 부득이 전 (3)호의 규정보다 낮은 위치에 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p> <p>(가) 수밀격벽과 동등한 강도 및 수밀성을 갖는 구획을 설치하고 내측문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현문 또는 선미문과 내측문 사이의 구획에는 해수누설 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빌지 배수를 위하여 쉽게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나사조임식 체크 밸브붙이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선수문, 현문 및 선미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현문 및 선미문</p> <p>201. 일반</p> <p>1. <현행과 동일></p> <p>2. 배치</p> <p>(1) 여객선의 선미문은 건현갑판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현문 및 로로화물선의 선미문은 건현갑판상부 또는 아래에 배치할 수 있다.</p> <p>(2) 현문 및 선미문은 해당위치 및 주위의 구조와 동등한 강도 및 밀폐성을 가져야 한다.</p> <p>(3) 현문 및 선미문의 하단은 원칙적으로 <u>최고 만재흘수선의 상단으로부터 위로 230mm인 점을 최하점으로 하여 선측에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보다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2020)</u></p> <p>(4) 부득이 전 (3)호의 규정보다 낮은 위치에 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p> <p>(가) 수밀격벽과 동등한 강도 및 수밀성을 갖는 구획을 설치하고 내측문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현문 또는 선미문과 내측문 사이의 구획에는 해수누설 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빌지 배수를 위하여 쉽게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나사조임식 체크 밸브붙이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p>- ICLL(Reg. 21) 과 일부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의장수 및 의장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각창</p> <p>901. ~ 902. <생략> 903. 구조 및 치수 각창 주요부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르며, 호칭치수 및 종별에 따라 표 4.8.27과 표 4.8.28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6) <신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의장수 및 의장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각창</p> <p>901. ~ 902. <현행과 동일> 903. 구조 및 치수 각창 주요부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르며, 호칭치수 및 종별에 따라 표 4.8.27과 표 4.8.28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5) <현행과 동일> (6) <u>접합강화유리(laminated toughened safety glass)의 두께는 다음 식에 따른다. (2020)</u></p> $t_l = \sqrt{\frac{\sum_{i=1}^n t_i^3}{t_{\max}}} \geq t_i$ <p><u>t_l : 접합강화유리의 동등두께 (mm)</u> <u>t_i : (1)호에 따른 강화유리의 두께 (mm)</u> <u>n : 접합되는 유리의 개수</u> <u>t_i : 각각의 접합되는 유리의 두께 (mm)</u> <u>t_{\max} : 접합되는 유리중에서 가장 두꺼운 두께 (mm)</u></p> <p><u>다만, 접합되는 각각의 유리두께는 최소한 4 mm 이상이어야 한다.</u></p> <p><이하 현행과 동일></p>	<p>- 강화유리에 상응하는 접합강화유리 두께 관련식을 신설함</p>

개정 배경 및 내용

1. 개정배경(IACS UR S17 (R.10), UR S18(R.10), S30(Corr.1) S21A(Corr.2) 반영) Hull Panel에서 SUBC(Self Unloading Bulk Carriers)에 대한 관련 UR 적용 여부를 식별함. (SUBC를 산적화물선 범주에 포함)

- (1) UR S17(R.10) : 규칙 7편 3장 10절 산적화물선 침수중강도 : SUBC에도 적용(2020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선박)
- (2) UR S18(R.10) : 규칙 7편 3장 12절 산적화물선 파형 횡수밀격벽 : SUBC에도 적용(2020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선박)
- (3) UR S30(Corr.1) : 규칙 7편 3장 18절 산적화물선 창구덮개 고박장치(UR S21에 따라 지어지지 않은 창구덮개) : SUBC에 적용되지 않음 → SUBC의 창구덮개는 UR S21에 따라 지어져야 함
- (4) UR S21A(Corr.2) : 규칙 4편 2장 1절 일반사항 (UR S21A에 따라 지어지는 창구덮개) : SUBC에 적용되지 않음
- (5) 7편 3장 9절 산적화물선 창구덮개 : ‘SUBC도 포함됨’을 명시함.

SUBC : ‘호퍼타입 화물창’과 ‘컨베이어 시스템’이 선박의 주요 특징. 호퍼 타입의 많은 개구를 통해 이중저 탱크 상단의 컨베이어 벨트로 산적화물 이송 가능. 호퍼 개구는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힌지 또는 게이트. 화물창이 수밀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UR 적용



2. 개정내용

- (1) 신구대비표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편 선체의장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p> <p>1. 이 장의 규정은 산적화물선, 광석운반선 및 검용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노출갑판 상 제1위치 및 제2위치에 있는 창구덮개, 창구코밍에 적용한다. 선수갑판의 작은 창구에 대하여는 9장을 적용한다. 【지침 참조】</p> <p>2. 102.에 정의하는 제1위치 및 제2위치의 창구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스킷과 클램핑 장치에 의하여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창구덮개에 의하여 풍우밀을 확보하여야 한다.</p> <p>102.~ 10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 제 7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편 선체의장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p> <p>1. 이 장의 규정은 산적화물선, SUBC(Self-Unloading Bulk Carriers), 광석운반선 및 검용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노출갑판 상 제1위치 및 제2위치에 있는 창구덮개, 창구코밍에 적용한다. 선수갑판의 작은 창구에 대하여는 9장을 적용한다. 【지침 참조】</p> <p>2. 102.에 정의하는 제1위치 및 제2위치의 창구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스킷과 클램핑 장치에 의하여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창구덮개에 의하여 풍우밀을 확보하여야 한다.</p> <p>102.~ 107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 제 7 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right;">↓</p>	<p>- IACS UR S21A(Corr.2)</p>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안)

제4편 선체의장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제 1 장 타

제 1 장 타

제 7 절 타두재와 타심재의 커플링

제 7 절 타두재와 타심재의 커플링

701. ~ 702. <생략>

701. ~ 702. <현행과 동일>

703. 콘 커플링 **【규칙 참조】**

703. 콘 커플링 **【규칙 참조】**

1. 일반

1. 일반 *(2020)*

- (1) 하부타두재는 슬러징 너트 또는 유압장치에 의하여 타 본체와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선박건조자는 이러한 결합에 관한 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하부타두재의 부식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3) 타 본체의 주강부의 최소두께 t_b (**지침 그림 4.1.12** 참조)는 요구되는 하부타두재 지름의 0.25배 이상이어야 한다.

- (1) 하부타두재는 슬러징 너트 또는 유압장치에 의하여 타 본체와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선박건조자는 이러한 결합에 관한 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하부타두재의 부식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3) 타 본체의 주강부의 최소두께 t_b (~~지침 그림 4.1.12~~ 참조)는 요구되는 하부타두재 지름의 0.25배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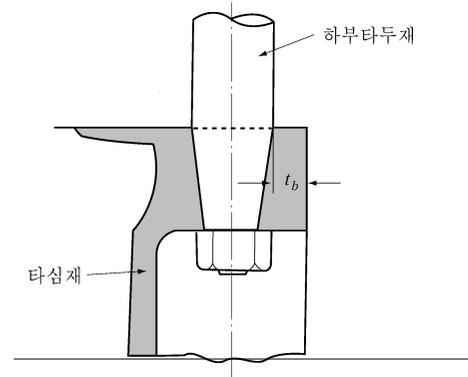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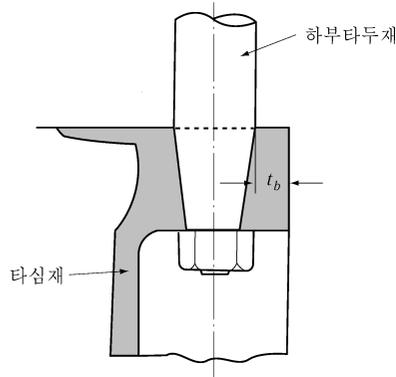


그림 4.1.2 하부타두재와 타심재의 커플링

그림 4.1.2 하부타두재와 타심재의 커플링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 규칙 703. 2항 (6)호의 규정과 서로 상충되어 삭제함